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운영조례(안)

의 안	234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5.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,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함.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.(안 제3조 제1항)
- 다.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를 토지관리과장으로,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함.(안 제6조)

3. 관계법규

-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(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 -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·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,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·조정한다.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, 위원은 법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,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한다.

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 7 조(수당지급) 자치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